**사모집합투자회사(고유재산) 확약서**

유안타제1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하여,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규정)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이며, 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, 당사 보유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, 동 요건이 수요예측 배정 시점까지 유지될 것을 확약합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**일반사모집합투자회사(고유재산) 수요예측 참여조건** | **충족 여부** |
| 1.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 | 20XX. XX. XX |
| 1.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 3개월간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 | XX 억원 |
| 1.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2.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,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3.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(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)이 300억원 이상일 것 | □ 충족  충족 요건: 1) 또는 2) |

※ 수요예측 참여시점 현재 기준

위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름이 있는 경우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지정 등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.

2024. . .

수요예측 참여기관

대표이사 (인)